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4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민형배 • 박민규

이성윤 • 박홍배 • 이춘석

정준호 · 박희승 · 허종식

김윤덕 • 서삼석 • 이해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,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.

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(2021년 ~ 2025년)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됐음에도 불구하고, 저출생·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,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. 특히,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 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 석·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저출산 · 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 ·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

미치는 영향을 예측·분석·평가하도록 '인구영향평가제도'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인구영향평가)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·고 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"인구영향평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④ 인구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인구영향평가) ① 정부
	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
	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
	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
	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
	평가(이하"인구영향평가"라 한
	<u>다)하여야 한다.</u>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
	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기본계획
	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
	반영하여야 한다.
	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구
	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
	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
	제출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	<u>④ 인구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</u>
	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